

2024년 글로벌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모집공고

국내 농식품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「2024년도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3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 모집 개요

□ 지원규모 : 00개 업체 내외 * 예산범위 내 선정

□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

* 단, 사업비 집행 정산인정 기간은 2024. 1. 1. ~ 11. 30.까지로 운용

□ 지원대상 :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 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 /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필수

* 선정제외 : 수산식품 수출업체(단, 농식품과 수산식품 동시 취급 시 지원 가능),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, 최근 5년(19~'23) 내 동 사업 3년(회) 이상 지원업체

□ 지원내용 : 수요자 맞춤형 아래 항목중 자율 선택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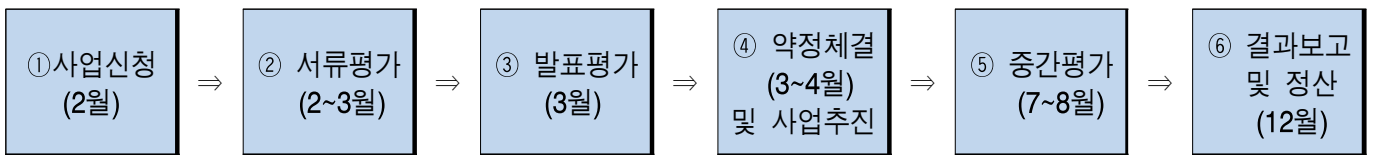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 내용
브랜드 컨설팅	○ (시장조사) 업체별 목표국가·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○ (전략수립)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
브랜드 홍보마케팅	○ (온라인 마케팅)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, SNS 홍보 등 ○ (미디어 마케팅) 옥외매체 광고, TV광고, 신문/잡지광고, 입간판 제작 등

< 유의 사항 >

- 목표국가에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브랜드의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업체로서 목표국가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업체만 신청가능
- 타 aT 지원사업과 동일 항목 중복 정산 불가
- 약정금액(총사업비)의 50% 이상을 집행해야 중간 정산 및 최종 정산이 가능

- **지원한도** : 최대 100백만원에서 120백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
 - 지원횟수별 지원액 : 1~2년차 최대 120백만원 / 3년차 최대 100백만원
 - 지원 비율 : 중소 80%, 중견기업 70% *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
 - 약정금액(총 사업비)에 부가가치세(VAT) 미포함 * 부가가치세는 참가기업 부담
 - * 총 사업비 = 국고지원액(100백만원 ~ 120백만원) + 자부담액(20% ~ 30%)
 - ** 국고지원액 100백만원인 중소기업의 총사업비(약정금액)은 125백만원(자부담 25백만원)
 - 예산범위내 선정추진함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, 중간점검(예산 집행실적, 사업추진계획 점검 등)에 따라 업체별 지원한도 및 배정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

□ **추진일정** * 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

2 신청 및 접수

- **신청기간** : 2024년 2월 13일(화) ~ 2월 26일(월) 2주간
- **신청방법**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을 통한 온라인신청
 - * 로그인(신규업체 : 회원가입 필요, One Pass 신청시스템) → 사업신청(모집공고/신청) → 2024년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모집공고 →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→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(압축파일로 업로드)
- **지원대상** :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(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필수)
 - * 선정제외 : 수산식품 수출업체(단, 농식품과 수산식품 동시 취급 시 지원 가능),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, 최근 5년(19~'23) 내 동 사업 3년(회) 이상 지원업체

□ **지원 제외** *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(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)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 중인 기업,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-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
- 타 지원기관의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는 경우
- 당해연도 aT 글로벌성장패키지 선정기업

3

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기간** : 2024년 2월 13일(화) ~ 2월 26일(월) 2주간

□ **신청방법**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을 통한 온라인신청

[필수 제출서류]

-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첨부 작성양식 파일)
- ②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제출(기 제출업체 생략)
 - * 제출방법 : global.ator.kr → 공지사항 →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안내 확인
- ③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→ One Pass 신청시스템 동의 시 자동 제출
- ④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→ One Pass 신청시스템 동의 시 자동 제출
-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(총2부) → One Pass 신청시스템 동의 시 자동 제출
- ⑥ 신청 브랜드 국내 상표등록증
- ⑦ 신청 브랜드 목표국가 상표등록증(또는 출원증빙)
- ⑧ 목표국가 현지 입점증빙(유통매장 입점계약서, 온라인 판매페이지 URL 등)

[(해당 시) 선택 제출서류] * 가점 적용

- ① 정부 인증 입증서류 * 유효기간 내 입증 서류만 인정
- ②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: 품목제조보고서(원산지 필수 포함)
- ③ 해외인증서 * 유효기간 내 입증 서류만 인정
- ④ 농식품 분야 (예비)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장애인기업 인증서

□ **문의처** : aT 수출기업육성부(brand@at.or.kr / 061-931-0868)

붙임 1 2024년 글로벌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

□ 지원자격

구분	확인사항	적합여부	
적합성	○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, 수출실적 보유 여부	보유 ()	미보유 ()
	○ 현지 판로확보 여부(현지 온라인몰 또는 유통매장 입점) * 입점계약서, 온라인몰 판매페이지 URL 등 제출	확보 ()	미확보 ()
	○ 선정제한 사항 : 수산식품 수출여부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3년(회) 이상 지원업체	적합 ()	부적합 ()

□ 계량평가(40점)

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기준				
수출 성장성 (25점)	'23년 수출실적(\$) (목표국가, 목표품목) *2개국가 평균	10	100만불 이상	50~100만불	10~50만불	5~10만불	5만불 미만
			10	8	6	4	2
	'23년 수출실적(\$) (전체국가, 목표품목)	5	200만불 이상	150~200만불	100~150만불	50~100만불	50만불 미만
재무 건전성 (15점)	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 (목표국가, 목표품목)	10	100% 이상	50~100%	25%~50%	0%~25%	0% 미만
			10	8	6	4	2
	'22년 총매출액(원)	5	100억원 이상	50 ~ 100억원	25 ~ 50억원	10 ~ 25억원	10억원 미만
			5	4	3	2	1
	'22년 자기자본비율 (%, 자본/자산)	10	70% 이상	50~70%	30~50%	10~30%	10% 미만
			10	8	6	4	2

- * 최근 1개년 수출실적만 있을 경우, 수출증가율 항목 최저점수(2점)부여
- * 최근 2개년 수출실적만 있을 경우, 2개년 수출증가율 적용
- *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목표 업체 수의 1.5배수 내외 비계량(발표) 평가 실시

□ 비계량평가(60점) : 발표 평가(평가위원회 별도 구성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
사업 이해도	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수준 등 종합평가	20	A	B	C	D	E
			20	16	12	8	4
조직력 및 시장 개척도	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인력, 기업규모 등 사업역량 시장진출 현황, 바이어 확보 현황 등	20	A	B	C	D	E
			20	16	12	8	4
브랜드 경쟁력 및 품목 적합성	목표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, 가치, 성장 가능성 등 목표품목의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 가능성	20	A	B	C	D	E
			20	16	12	8	4

□ 가감점

구분	항목	점수	세부사항
가점 (최대 10점)	신선 및 국산원료 사용	5점	○ 가공식품 수출업체 시 국산원료 주 사용업체(주원료의 원산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시 인정)
	인증보유	인증 당 각 1점 5점 한도	○ 전통식품품질인증, 명인, 유기가공식품, 농공상용합, 지리적표기 인증, 할랄, 코셔, 비건, 미FDA 등
	사회적/장애인기업	5점	○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서, 장애인기업 인증서
감점	전년도 예산집행률	5점	○ 전년도 참가업체 중 예산집행률 70~90% 이하 * 전년도 예산집행률 70% 미만은 사업 참여 제한